

광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540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조수환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56,666,667원(가액 100,000,000원 -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866,666,676원 ×

100,000,000원/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을 443,333,333원(가액 1,900,000,000원 - 866,666,676원 $\times$ 1,900,000,000원/2,0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C는 44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이 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6485 대여금 판결로 D에 대하여 합자회사 E, F, G와 연대하여 7,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D, G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0. 6. 18. 확정되었다.

○ 주식회사 H는 2018. 12. 13.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지상 태양광발전소 6호 시설 기타 영업에 관하여 총 영업양수도대금 2,000,000,000원에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D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포괄 영업양수도계약서 제18조 특약사항 제2항에는 “양수인은 거래 종결일까지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토지와 발전시설(사업권 포함)의 양수도계약을 각각 양도인과 계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와 본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특약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H는 피고 주식회사 C를 태양광 발전소 및 제반 시설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 피고 주식회사 B를 토지를 양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의 양수인으로 지정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2. 13. D와 위 발전소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부대장치, 부대관리 일체에 관하여 양도대금 1,900,000,000원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2. 13.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은 주식회사 H가 D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2019.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지상 공장재단에는 J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9. 3. 28. 말소되었고, 당시 대출금 867,549,963원(그 중 상환원금 866,666,676원)이 변제되었다.

○ 피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양도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는데, 2019. 3. 28. 부가세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항목 중 보완공사비, 전력판매수입, 용역비용, 법무비용은 D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나 D와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명목	금액(원)	비고
계약금	300,000,000	2018. 12. 13. 지급
중도금	50,000,000	2019. 2. 14. 지급
잔금 일부	200,000,000	2019. 3. 22. 지급
보완공사비	44,000,000	잔액에서 차감
전력판매수입(2019년 1,2월분)	21,334,321	잔액에서 차감
양도인 대출금 상환	867,549,963	2019. 3. 28. 지급
1차 잔금(유보금 외 잔액)	182,115,716	2019. 3. 28. 지급
용역비용(개발행위)	43,000,000	2020. 3. 31. 지급
법무비용	22,000,000	2020. 6. 26. 지급
2차 잔금	74,000,000	2020. 6. 26. 지급
지목변경 취득세	506,640	2020. 6. 29. 지급
최종 잔금	95,493,360	2020. 7. 31. 지급
	1,900,000,000	

○ 2019. 2. 13. 기준 D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 목록	평가액	우선변제권 채무액	재산가치
1	전남 화순군 K 외 2필지 및 지상건물(수목 포함)	1,295,166,100	594,657,730	730,508,370
2	용인시 기흥구 L건물 M호	128,000,000	보증금 90,000,000 N은행 근저당권	
3	나주시 O	297,180,900	P은행 Q	
	나주시 R	286,031,800		
4	전남 고흥군 S리 및 태양 광발전소	2,000,000,000	866,666,676	1,133,333,324
		4,006,378,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2019. 2. 13. 당시 원고에 대한 소송상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 있는 주요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을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D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D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H는 2018. 12. 13.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지상 I태양광발전소 6호 시설 기타 영업에 관하여 총 영업양수도대금 2,000,000,000원에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H의 지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발전소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부대장치, 부대관리 일체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9. 2. 13.

D과 거래대금 각 1,900,000,000원, 100,000,000원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다만 일부 이행에 갈음한 금액이 있다), 각 위 발전소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부대장치, 부대권리 일체를 이전받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달리 의심되는 정황도 없는바, 피고들의 양도계약, 매매대금 지급 경위를 보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 취득에 있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목 록

1. 토지

- 가. 전남 고흥군 T 잡종지 14,709㎡
- 나. 전남 고흥군 U 잡종지 441㎡(V 등록전환)
- 다. 전남 고흥군 W 잡종지 751㎡(X 등록전환)

2. 구조물

전남 고흥군 T, U(V 등록전환), W(X 등록전환) 지상 태양광설비(용량 990.kw). 끝.

